-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 동의안 -

#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

2016년 9월 5일 교 통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년 8월 12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5월 16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(2016년 9월 5일 상정·의결)

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서 서울메트로,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우영하고 있음
- 이에,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하철 분야 출자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#### 나. 출자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메트로, 서울도시철도공사
- 관련법령 : (공통)지방공기업법 제49조
  - 서울메트로 :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  - 서울도시철도공사 : 서울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 다. 주요 사업

-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내진보강
-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
-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
-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화장실 확충
-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
-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
-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및 센서 교체
- 지하철 공기질 개선, 친환경 LED조명 교체
- 테마역사 조성
- 기타 지하철 안전관련 사업 등

라. 출자의 필요성

○ 하루 8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

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양 지하철 공사에의 예산 지원 필요

○ 지하철 시설 노후화 및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사고('16. 5월) 이

후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, 추진하고 있으나 지

하철 운영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 충당 수준에 지나지 않

아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한 실정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

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

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

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7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#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○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'17년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출자 예산 편성 전에 출자 동의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
#### ※ 참고 :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 결을 얻어야 한다.

#### 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체 수입만으로 서울 지하철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, 내진보강, 승강편의시설 설치, 공기질 개선, 노후전동차 교체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 및 운영기관과 함께 매칭으로 사업비를 출자하고 있음
- 서울시가 검토 중인 '17년 서울지하철 양공사 출자금액은 '16년 대비 98.9%(2,059억 26백만원)감소한 2,081억 28백만원으로 '17년 출자금액이 급감한 주된 사유는 '17년 도시철도공채 부채원금 상환 만기 도래에 따른 공사전출금이 '16년에 비해 2,430억 57백 만원이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 것임

○ 세부 출자내역을 살펴보면 '지하철 1~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' 등 국비·시비·운영기관 매칭 사업은 '16년 대비 26.8%(218억 26백만원) 증가한 815억 86백만원, '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 구조물 보강' 등 시비·운영기관 매칭 사업은 59.2%(185억 97백 만원) 증가한 313억 99백만원을 출자하는 것이며,

이 중 '지하철 승강장비상문 개선사업'은 국비·시비·운영기관 신규 매칭 사업으로 29억 45백만원, '지하철관제센터 통합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', 'PSD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'은 시비·운영 기관 신규 매칭 사업으로 각각 66억 80백만원, 53억 60백만원을 출자하는 것임

(단위 : 천원)

※ 참고 :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 현황

구 분	2016년	2017년 (편성검토안)	증 감	비고
합 계	414,053,500	208,127,856	△205,925,644	
지하철 1~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	30,000,000	46,500,000	16,500,000	국비:시비:운영기관 =40%:30%:30%
지하철 1~4호선 내진보강	9,274,000	14,946,000	5,672,000	
지하철 승강장비상문 개선사업	-	2,945,000	2,945,000	
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	14,715,000	10,617,000	△4,098,000	국비:시비:운영기관 =30%:35%:35%
지하철역 공기질 개선사업	5,771,000	6,578,000	807,000	
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	2,727,000	3,585,000	858,000	시비:운영기관 =50%:50%
장애인용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	2,527,500	982,500	△1,545,000	
지하철 친환경 LED 조명 교체	790,000	291,000	△499,000	
지하철역 점자 <del>블록</del> 설치	1,657,000	-	△1,657,000	
지하철관제센터 통합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	-	6,680,000	6,680,000	
PSD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	-	5,360,250	5,360,250	
선도 테마역사 조성	2,600,000	2,000,000	△600,000	시비:운영기관 =50%:50% (※4호선쌍문역은 시비100%)
지하철 2: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	2,500,000	12,500,000	10,000,000	시비:운영기관 =13%:87%
지하철역 화장실 확충	1,300,000	1,300,000	-	시비 역당 1억원씩 <del>출</del> 자
공사전출금	336,900,000	93,843,106	△243,056,894	- - 시비 100% 출자 -
임산부 배려석 디자인 개선	372,000	-	△372,000	
지하철역 캐노피 설치	2,600,000	-	△2,600,000	
시민안전지킴이 사업	320,000	-	△320,000	

- 서울지하철의 경우 낮은 요금수준과 이를 상회하는 승객 일인당 수송 원가¹), 노인·장애인·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 등 구조적으로 운영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개선, 내진보강,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출자를 통해 서울지하철 양공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
- 다만, 원칙적으로 서울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안전 담보와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에 대해 출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, 서울 시와 서울지하철 양공사는 출자된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<sup>1) 2015</sup>년 기준 서울지하철 일인당 수송원가 : 서울메트로 1,185원, 서울도시철도공사 1,407원

#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 동의안

의 안 번 호 1327

제출년월일: 2016년 8월 12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##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서 서울메트로,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,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하철 분야 출자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출자개요

○ 대상기관 : 서울메트로, 서울도시철도공사

○ 관련법령 : (공통)지방공기업법 제49조

- 서울메트로 :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서울도시철도공사 : 서울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 나. 주요 사업

-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내진보강
-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
-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
-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화장실 확충

-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
-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
-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및 센서 교체
- 지하철 공기질 개선, 친환경 LED조명 교체
- 테마역사 조성
- 기타 지하철 안전관련 사업 등

## 다. 출자의 필요성

- 하루 8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양 지하철 공사에의 예산 지원 필요
- 지하철 시설 노후화 및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사고('16. 5월) 이후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, 추진하고 있으나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 충당 수준에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한 실정임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 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7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관리팀 이영희 (☎2133-2248)